

도시철도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수성엔지니어링(이하 “(주)수성”이라 한다)은 5678도시철도 유출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사와 (주)수성은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 및 보급이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에너지 사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에너지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공사와 (주)수성의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지하철 정거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사업(ESCO)으로 공사의 해당 정거장에 우선 검토하며, 정거장 인근의 공공건물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절약 열공급 사업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2. 대상 역사 : 노원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다만,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세부시행)

1. 공사는 관련 법령 및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열공급사업에 따른 관련 부지·시설물의 출입 및 관련 사업의 인·허가 취득을 위해 협조한다.
2. (주)수성은 제2조의 범위내에서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사업의 타당성 조사, 냉·난방 설비의 설계·시공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ESCO) 사업을 진행한다.

3. 사업추진 방법과 사업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 공사와 (주)수성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 받았거나 제공받을 상대방의 내부 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효력 등)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협력범위 및 세부시행에 이견이 있을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해각서의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SOOSUNG
ENGINEERING Co., Ltd.

(주)수성엔지니어링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부사장 강병훈